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제출 기한 : 08.24(월) ~ 08.30(일)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서류		체크사항
기본서류	신분증 사본(본인)	본인확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가능
	인감도장(본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본인)	발급일 · 전입일 · 주민번호 · 세대구성 사유 · 배우자 확인 등 (모든정보표시발급)
	주민등록표초본(본인)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확인 (모든정보표시발급)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세대구성원 확인 (상세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본인)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개월 동안 계속하여 90일 초과 국외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표초본(피부양 직계존속)	만65세이상의피부양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실 확인 (모든정보표시발급)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상세발급)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모든정보표시발급)
	복무확인서(본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해당주택건설지역(속초시 및 강원도)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위임장	[양식]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에 한함 ,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대리인 본인 확인)
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0)**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자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미비시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상세'발급을 원칙으로 함. 또한, 주민등록표등(초)본에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정당계약 체결 안내 [09.01(화) ~ 09.03(목)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예비입주자의 경우 별도 안내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계약금(1차)]입금증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계약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사전 서류제출기간에 사용한 인감도장(인감날인 대조)]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사전제출대리인과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에 한함)